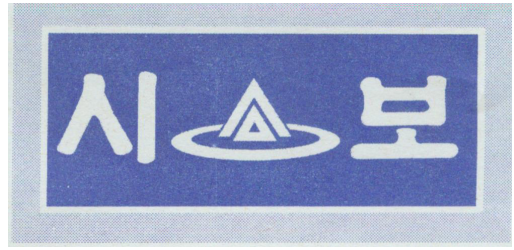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461호 2012. 6. 19.(화)

【조 례】

- 제820호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제821호 공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6
- 제822호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제823호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 제824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 제825호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 제826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35

【훈 령】

- 제200호 공주시 공약실천 관리 규정 42

회 람							
--------	--	--	--	--	--	--	--

공주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2. 6. 11.)
에서 의결된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2년 6월 19일

공주시 조례 제 820 호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
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각 항 번호 다음을 한 칸 띄어 쓴다.

별표 1의 반포면의 리명란 중 “성강리, 봉암리, 국곡리, 원봉리, 도남리”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면 소계의 리명란 중 “13”을 “8”로 하며, 장기면란
을 삭제하고, 의당면의 리명란 중 “송정리, 송학리, 용현리, 용암리, 태산
리”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면 소계의 리명란 중 “17”을 “12”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주시 동의 명칭과 구역 (제2조제2항 관련)

동명칭	구 역
반죽동	종전의 공주시 반죽동 일원
봉황동	종전의 공주시 봉황동 일원
중학동	종전의 공주시 중학동 일원
중 동	종전의 공주시 중동 일원
산성동	종전의 공주시 산성동 일원
교 동	종전의 공주시 교동 일원
웅진동	종전의 공주시 웅진동 일원
금성동	종전의 공주시 금성동 일원
옥룡동	종전의 공주시 옥룡동 일원
금학동	종전의 공주시 금학동 일원
봉정동	종전의 공주시 봉정동 일원
주미동	종전의 공주시 주미동 일원
태봉동	종전의 공주시 태봉동 일원
검상동	종전의 공주시 검상동 일원
오곡동	종전의 공주시 오곡동 일원
신기동	종전의 공주시 신기동 일원
소학동	종전의 공주시 소학동 일원
상왕동	종전의 공주시 상왕동 일원
신관동	종전의 공주시 신관동 일원
쌍신동	종전의 공주시 쌍신동 일원
월미동	종전의 공주시 월미동 일원

동명칭	구역
석장리동	종전의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일원
송선동	종전의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일원
동현동	종전의 공주시 장기면 동현리 일원
금홍동	종전의 공주시 금홍동 일원
월송동	종전의 공주시 월송동 일원 종전의 공주시 신관동 1-24, 1-29, 1-32, 1-35, 1-40, 1-45, 5, 5-7~13, 5-16, 5-19, 5-21, 8, 22-1, 22-10, 22-13~14, 22-33~36, 22-48, 22-50~52, 22-54, 22-57, 22-61, 22-73~74, 22-109, 22-125~126, 22-128, 22-138~139, 22-143, 22-152, 22-170, 22-173, 22-176, 22-195, 22-197, 22-208~212, 36, 36-1, 36-13, 36-24~25, 36-27, 40-6~10, 130, 537-29~30, 537-32, 537-40, 668, 산9-8, 산9-27, 산9-31, 산 9-60, 산9-76, 산9-103
무릉동	종전의 공주시 무릉동 일원
27개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 -----.</p>

공주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2. 6. 11.)
에서 의결된 공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2년 6월 19일

공주시 조례 제 821 호

공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통·반 설치조례”를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2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
4조2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본문 중 “10내지 100가구”를 “10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로, “20
내지 150가구”를 “20가구 이상 150가구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2 내지 6개반으로”를 “2개반 이상 6개반 이하로”로, “5 내지 15개반으
로”를 “5개반 이상 15개반 이하로”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서 당해”를 “사람으로서 해당”으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중 “한함”을 각각 “한정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 법령에 의하여”를 “그 밖의 법령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누설하여서는”을 “누설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공하여서는”을 “제공해서는”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실비변상)”을 “(실제비용 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2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의 반포면의 행정리·통명란 중 “성강리, 봉암리, 국곡리, 원봉1리, 원봉2리, 도남리”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면 계의 행정리·통명란 중 “21”을 “15”로, 반명란 중 “76”을 “57”로 하며, 장기면란을 삭제하고, 의당면의 행정리·통명란 중 “송정리, 송학1리, 송학2리, 용현리, 용암1리, 용암2리, 태산리”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면 계의 행정리·통명란 중 “24”를 “17”로, 반명란 중 “109”를 “84”로 하고, 신관동의 행정리·통명란 중 “신관20통, 신관21통, 신관30통, 신관31통, 신관36통, 금홍1통, 금홍2통, 금홍3통, 금홍4통, 금홍5통, 금홍6통, 월송동, 무릉동”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면 계의 행정리·통명란 중 “50”을 “37”로, 반명란 중 “348”을 “248”로 하고, “관할지역(자연부락명 또는 번지)”를 “관할 구역(자연마을명 또는 번지)”로 하며, 신관동란 다음에 월송동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 구역(자연마을명 또는 번지)
월 송 동	석장리동	1반	생이
		2반	공주시 석장리길 87, 89, 90-1, 90-3, 90-5, 90-7, 90-9, 90-11, 90-13, 94, 95-2, 95-6, 95-8, 95-12, 96, 99, 100-4, 101, 103, 106, 106-1, 124, 128
		3반	공주시 석장리길 87, 88-3, 88-7, 88-11, 88-17, 88-33, 88-35, 88-37, 89, 90-6, 90-8, 90-10, 90-16, 90-17, 90-18, 90-19, 90-23 공주시 석장리대추골길
	송선 1통	1반	공주시 방머리1길 일대 공주시 방머리2길 일대
		2반	공주시 장척로 76-3, 76-9, 76-10, 98-3, 98-8, 98-13, 98-16, 104, 106, 108-5, 108-7, 108-8, 116-7, 116-9, 116-11, 116-14, 122, 124, 124-1, 128, 128-1, 128-9
		3반	금동
		4반	덕흥
		5반	황새말
		6반	큰말
		7반	선유동
	송선 2통	1반	망골
		2반	요골
	동현 1통	1반	지랭이
		2반	아랫말, 동나무골
		3반	낚은터
	동현 2통	1반	주막거리
		2반	떡징이
		3반	어덕이
	신관 20통	1반	공주시 신금2길 47-1 곰나루아파트 101동 101호~401호, 102호~402호, 103호~403호, 104호~404호, 105호~405호, 106호~406호, 107호~407호, 108호~408호
		2반	공주시 신금2길 47-1 곰나루아파트 101동 501호~801호, 502호~802호, 503호~803호, 504호~804호, 505호~805호, 506호~806호, 507호~807호, 508호~808호
3반		공주시 신금2길 47-1 곰나루아파트 101동 901호~1201호, 902호~1202호, 903호~1203호, 904호~1204호, 905호~1205호, 906호~1206호, 907호~1207호, 908호~1208호	
4반		공주시 신금2길 47-1 곰나루아파트 101동 1301호~1501호, 1302호~1502호, 1303호~1503호, 1304호~1504호, 1305호~1505호, 1306호~1506호, 1307호~1507호, 1308호~1508호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 구역(자연마을명 또는 번지)
월 송 동	신관 20통	5반	공주시 신금2길 47-1 곰나루아파트 102동 101호~401호, 102호~402호, 103호~403호, 104호~404호, 105호~405호, 106호~406호, 107호~407호, 108호~408호
		6반	공주시 신금2길 47-1 곰나루아파트 102동 501호~801호, 502호~802호, 503호~803호, 504호~804호, 505호~805호, 506호~806호, 507호~807호, 508호~808호
		7반	공주시 신금2길 47-1 곰나루아파트 102동 901호~1201호, 902호~1202호, 903호~1203호, 904호~1204호, 905호~1205호, 906호~1206호, 907호~1207호, 908호~1208호
		8반	공주시 신금2길 47-1 곰나루아파트 102동 1301호~1501호, 1302호~1502호, 1303호~1503호, 1304호~1504호, 1305호~1505호, 1306호~ 1506호, 1307호~1507호, 1308호~1508호
	신관 21통	1반	공주시 신금2길 47-1 곰나루아파트 103동 101호~1402호
		2반	공주시 신금2길 47-1 곰나루아파트 103동 103호~1404호
		3반	공주시 신금2길 47-1 곰나루아파트 103동 105호~1406호
		4반	공주시 신금2길 47-1 곰나루아파트 103동 107호~1408호
		5반	공주시 신금2길 47-1 곰나루아파트 104동 101호~1502호
		6반	공주시 신금2길 47-1 곰나루아파트 104동 103호~1504호
		7반	공주시 신금2길 47-1 곰나루아파트 104동 105호~1506호
		8반	공주시 신금2길 47-1 곰나루아파트 104동 107호~1508호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 구역(자연마을명 또는 번지)
월 송 동	신관 30통	1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대아아이투빌 105동 101호~1702호
		2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대아아이투빌 105동 103호~1704호
		3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대아아이투빌 105동 105호~1706호
		4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대아아이투빌 106동 101호~1004호
		5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대아아이투빌 106동 105호~1008호
		6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대아아이투빌 107동 101호~2002호
		7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대아아이투빌 108동 101호~1502호
		8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대아아이투빌 108동 103호~904호
		9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대아아이투빌 109동 101호~2002호
	신관 31통	1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대아아이투빌 110동 101호~2002호
		2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대아아이투빌 110동 103호~2004호
		3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대아아이투빌 110동 105호~1506호
		4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대아아이투빌 110동 107호~908호
		5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대아아이투빌 111동 101호~1502호
		6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대아아이투빌 111동 103호~1504호
		7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대아아이투빌 111동 105호~906호
		8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대아아이투빌 112동 101호~2102호
		9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대아아이투빌 112동 103호~2104호
		10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대아아이투빌 112동 105호~2106호
		11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대아아이투빌 113동 101호~1502호
		12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대아아이투빌 113동 103호~1504호 공주시 신금2길 31 대아아이투빌 상가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 구역(자연마을명 또는 번지)
월 송 동	신관 36통	1반	공주시 신금2길 17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501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2반	공주시 신금2길 17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502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3반	공주시 신금2길 17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502동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4반	공주시 신금2길 17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503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5반	공주시 신금2길 17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504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6반	공주시 신금2길 17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504동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7반	공주시 신금2길 17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505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8반	공주시 신금2길 17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506동 101호 ~ 1001호, 102호 ~ 1002호
		9반	공주시 신금2길 17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507동 101호 ~ 1301호, 102호 ~ 1302호
		10반	공주시 신금2길 17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508동 101호 ~ 1301호, 102호 ~ 1302호
		11반	공주시 신금2길 17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508동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금흥 1통	1반	한적골(회관)
		2반	한적골
		3반	봉무동
		4반	장골
	금흥 2통	1반	윗말
		2반	중미
		3반	여상입구(서당골)
		4반	동사무소/ 평골
		5반	안터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 구역(자연마을명 또는 번지)
월 송 동	금 흥 3통	1반	공주시 신금2길 98 새뜸현대4차아파트 401동 101호~2402호 공주시 신금1길 100 새뜸현대4차아파트 상가
		2반	공주시 신금2길 98 새뜸현대4차아파트 401동 103호~2404호
		3반	공주시 신금2길 98 새뜸현대4차아파트 402동 101호~2202호
		4반	공주시 신금2길 98 새뜸현대4차아파트 402동 103호~2204호
		5반	공주시 신금2길 98 새뜸현대4차아파트 403동 101호~2202호
		6반	공주시 신금2길 98 새뜸현대4차아파트 403동 103호~2204호
		7반	공주시 신금2길 98 새뜸현대4차아파트 403동 105호~2206호
	금 흥 4통	1반	공주시 신금2길 98 새뜸현대4차아파트 404동 101호~2402호
		2반	공주시 신금2길 98 새뜸현대4차아파트 404동 103호~2404호
		3반	공주시 신금2길 98 새뜸현대4차아파트 405동 101호~2402호
		4반	공주시 신금2길 98 새뜸현대4차아파트 405동 103호~2404호
		5반	공주시 신금2길 98 새뜸현대4차아파트 405동 105호~2406호
		6반	공주시 신금2길 98 새뜸현대4차아파트 406동 101호~2402호
		7반	공주시 신금2길 98 새뜸현대4차아파트 406동 103호~2404호
	금 흥 5통	1반	공주시 한적2길 51-14 우남퍼스트빌 101동 201호~1801호, 202호~1802호
		2반	공주시 한적2길 51-14 우남퍼스트빌 101동 203호~1803호, 204호~1804호
		3반	공주시 한적2길 51-14 우남퍼스트빌 102동 201호~1801호, 202호~1802호
		4반	공주시 한적2길 51-14 우남퍼스트빌 102동 203호~1803호, 204호~1804호, 205호~1805호
		5반	공주시 한적2길 51-14 우남퍼스트빌 103동 201호~1201호, 202호~1702호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 구역(자연마을명 또는 번지)
월 송 동	금홍 5통	6반	공주시 한적2길 51-14 우남퍼스트빌 103동 203호~1703호, 204호~1704호
		7반	공주시 한적2길 51-14 우남퍼스트빌 104동 201호~1701호, 202호~1702호
		8반	공주시 한적2길 51-14 우남퍼스트빌 104동 203호~1703호, 204호~1704호
	금홍 6통	1반	공주시 한적2길 51-14 우남퍼스트빌 105동 201호~1601호, 202호~1802호
		2반	공주시 한적2길 51-14 우남퍼스트빌 105동 203호~1803호, 204호~1804호, 205호~1805호
		3반	공주시 한적2길 51-14 우남퍼스트빌 106동 201호~1801호, 202호~1802호
		4반	공주시 한적2길 51-14 우남퍼스트빌 106동 203호~1703호, 204호~1704호
		5반	공주시 한적2길 51-14 우남퍼스트빌 106동 205호~1705호, 206호~1606호
		6반	공주시 한적2길 51-14 우남퍼스트빌 107동 201호~1701호, 202호~1702호
		7반	공주시 한적2길 51-14 우남퍼스트빌 108동 201호~1801호, 202호~1802호
		8반	공주시 한적2길 51-14 우남퍼스트빌 108동 203호~1703호, 204호~1704호
		9반	공주시 한적2길 51-14 우남퍼스트빌 109동 201호~1801호, 202호~1802호
		10반	공주시 한적2길 51-14 우남퍼스트빌 109동 203호~1803호, 204호~1804호
	월송동	1반	용골, 양천재
		2반	전산, 다래울 일부
		3반	다래울
		4반	윗사송정
		5반	아래사송정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 구역(자연마을명 또는 번지)
월 송 동	무릉동	1반	공주시 무릉동길 141-2, 147-4, 147-6, 151, 152, 152-1, 154, 161, 162 (양뜸)
		2반	공주시 무릉동길 133, 135, 135-1, 137, 139-1, 141-3, 141-4 (양뜸)
		3반	공주시 무릉동길 119-6, 119-8, 119-10, 119-12, 119-14, 131, 131-3, 131-7, 135-5 (양뜸)
		4반	느랏티, 한적골
		5반	중말
		6반	도넉골, 회관
계	18개 통	118개 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설치기준) 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반은 <u>10내지 100가구</u>로 구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u>20내지 150가구</u>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건물구조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p> <p>2. 리·통은 <u>2 내지 6개반</u>으로 구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u>5 내지 15개반</u>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건물구조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다.</p> <p>제5조(통·반장, 명예반장의 위촉) ① (생략)</p> <p>② 통장, 반장, 명예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u>의거</u> 위촉한다.</p> <p>1. (생략)</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조2제5항에 따른 ----- -----.</p> <p>제3조(설치기준) ----- -----.</p> <p>1. ----- <u>10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u> ----- <u>20가구 이상 150가구 이하</u> ----- . ----- ----- -----.</p> <p>2. ----- <u>2개반 이상 6개반 이하</u>로 ----- <u>5개반 이상 15개반 이하</u>로 ----- . ----- ----- -----.</p> <p>제5조(통·반장, 명예반장의 위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따라 -----.</p> <p>1.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2. 반장, 명예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u>자로서</u>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통장의 추천에 <u>의하여</u> 읍·면·동장이 위촉한다.</p>	<p>2. ----- ----- <u>사람으</u> <u>로서</u> 해당 ----- ----- <u>있는 사람</u> ----- ----- <u>따라</u> ----- -----.</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임무) ① 반장은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p>	<p>제6조(임무) ① ----- ----- -----.</p>
<p>1. ~ 6. (생략)</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u>한함</u>)</p>	<p>7. ----- <u>한정함</u>)</p>
<p>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u>한함</u>)</p>	<p>8. ----- ----- <u>한정함</u>)</p>
<p>9. <u>기타 법령에 의하여</u> 주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p>	<p>9. <u>그 밖의 법령에 따라</u> ----- -----</p>
<p>② 명예반장은 반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p>	<p>② ----- -----.</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기타</u> 반 운영에 대한 협조</p>	<p>5. <u>그 밖에</u> -----</p>
<p>제8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u>누설하여서는</u> 아니된다.</p>	<p>제8조(비밀유지) ① ----- ----- <u>누설해서는</u> -----.</p>
<p>② 이·통장, 반장은 직무상 보관</p>	<p>② -----</p>

현행	개정안
<p>하고 있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u>제공하여서는</u> 아니된다.</p>	<p>----- ----- <u>제공해서는</u> -----.</p>
<p>제10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u>범위안</u>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실제비용 변상) ----- -- <u>범위</u> ----- -----.</p>
<p>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u>시행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2조(시행규칙) ----- <u>시행에</u> ----- -----.</p>

공주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2. 6. 11.)
에서 의결된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2년 6월 19일

공주시 조례 제 822 호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 (제2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비 고
공주시청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319)	
공주시청별관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25 (교동 120)	
유구읍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87-1 (석남리 264)	
이인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검바위로 217 (이인리 159-2)	
탄천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통산로 165 (삼각리 523-2)	
계룡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489 (월암리 50-3)	
반포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30 (공암리 375)	
의당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13 (청룡리 661-1)	
정안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중앙길 157 (광정리 253)	
우성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길 51 (동대리 418)	
사곡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103 (호계리 309)	
신평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안뜸길 14 (산정리 169)	
중학동주민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감영길 4 (반죽동 241-2)	
웅진동주민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백미고을길 9-8 (금성동 182-2)	
금학동주민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496-3 (금학동 357-8)	
옥룡동주민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342 (옥룡동 산7-1)	
신관동주민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1길 24-5 (신관동 585-4)	
월송동주민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현로 51 (월송동 481-3)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u>규정에</u> 의하여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에 따라</u> ----- ----- ----- -----.</p>

공주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2. 6. 11.)에서 의결된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2년 6월 19일

공주시 조례 제 823 호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항 번호 다음을 한 칸 띄어 쓴다.

별표 1 중 신관동의 관할구역(법정동명)란 중 “금홍동, 월송동, 무릉동”을 각각 삭제하고, 신관동란 다음에 월송동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월 송 동	1	석장리동
		송 선 동
		동 현 동
		신 관 동
		금 홍 동
		월 송 동
		무 룡 동

별표 2의 반포면의 법정리명란 중 “성강리, 봉암리, 국곡리, 원봉리, 도남리”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면 소계의 법정리명란 중 “13”을 “8”로, 이장정수란 중 “21”을 “15”로, 행정리명란 중 “21”을 “15”로 하며, 장기면란을 삭제하고, 의당면의 법정리명란 중 “송정리, 송학리, 용현리, 용암리, 태산리”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면 소계의 법정리명란 중 “17”을 “12”로, 이장정수란 중 “24”를 “17”로, 행정리명란 중 “24”를 “17”로 하고, “관할 구역(자연부락명)”을 “관할 구역(자연마을명)”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2. 6. 11.)
에서 의결된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2년 6월 19일

공주시 조례 제 824 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반포면, 장기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평면, 중
학동, 응진동, 금학동, 옥룡동, 신관동”을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평면, 중학동, 응진동, 금학동, 옥룡동, 신관동, 월송동”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98명”을 “97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81명”을 “958명”으로 한다.

별표 1, 별표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0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공주시 보건소	공주시 의당로 23 (신관동 571-8)	공주시 전역
공주시 유구보건지소	공주시 유구읍 유구초교길 40 (석남리 384-116)	유 구 읍
공주시 이인보건지소	공주시 이인면 검바위로 239 (이인리 211-6)	이 인 면
공주시 탄천보건지소	공주시 탄천면 통산3길 4-11 (삼각리 505-4, 509-1)	탄 천 면
공주시 계룡보건지소	공주시 계룡면 월암송정길 10 (월암리 385)	계 룡 면
공주시 반포보건지소	공주시 반포면 수실1길 8-8 (공암리 352-6)	반 포 면
공주시 의당보건지소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257 (청룡리903)(종합사회복지관내)	의 당 면
공주시 정안보건지소	공주시 정안면 광정장터길 16 (광정리 276-8)	정 안 면
공주시 우성보건지소	공주시 우성면 동대3길 11 (동대리 414-1)	우 성 면
공주시 사곡보건지소	공주시 사곡면 호계장터2길 9-1 (호계리 295-27)	사 곡 면
공주시 신평보건지소	공주시 신평면 신평길 81-11 (산정리 311-2)	신 풍 면
구계 보건진료소	공주시 유구읍 양지뜸길 7 (구계리 159)	구계리, 연종리, 세동리, 동해리
추계 보건진료소	공주시 유구읍 금계산로 883 (추계리 593-7)	추계1·2리, 덕곡리, 문금리, 탑곡리
신흥 보건진료소	공주시 이인면 송선군로 247-2 (신흥리 122-1)	신흥1·2리, 오룡리, 초봉리, 주뽕1·2리, 만수리, 운암리
대학 보건진료소	공주시 탄천면 임천고개로 16 (대학리 211-2, 212-6)	대 학1·2리, 운곡리, 견동리, 국동리, 유하리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덕지 보건진료소	공주시 탄천면 하효동길 64-6 (덕지리 182)	안영리, 덕지리, 화정리, 남산리
화현 보건진료소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104 (화현리 174-7)	화현리, 경천리, 금대리, 상성리, 월곡리, 죽곡리, 향지리
왕흥 보건진료소	공주시 계룡면 왕흥장악로 395 (내흥리 610-2)	구왕리, 내흥리
양화 보건진료소	공주시 계룡면 신원사로 410 (양화리 335-3)	양화1·2리
마암 보건진료소	공주시 반포면 마암길 29 (마암리 347-1)	마암리
상신 보건진료소	공주시 반포면 도예촌길 6 (상신리 190-11)	상신리, 하신리, 온천1·2리
석장리 보건진료소	공주시 석장리길 88-35 (석장리동 88-35)	석장리동, 무릉동
문천 보건진료소	공주시 정안면 정안마곡사로 622 (문천리 139)	문천리, 내문리, 산성리, 월산리
장원 보건진료소	공주시 정안면 구역말길 15-2 (장원리 456-6)	장원1·2리, 운궁리, 고성리, 쌍달리
모란 보건진료소	공주시 정안면 달성길 75 (화봉리 76)	상용리, 화봉1·2리, 전평리, 북계1·2리, 평정1·2리, 의당면 오인리
용봉 보건진료소	공주시 우성면 신영골길 1-6 (용봉리 62-1)	용봉리, 죽당리, 안양리, 오동리, 봉현리, 보흥리, 어천리, 방흥리
운암 보건진료소	공주시 사곡면 정안마곡사로 1762 (운암리 399-6)	운암리, 회학리, 가교리, 월가리, 유룡리, 부곡리
대룡 보건진료소	공주시 신평면 새우재길 51 (대룡리 472-3)	대룡리, 입동리, 용수리, 청흥리, 봉갑리, 조평리, 쌍대리
평소 보건진료소	공주시 신평면 평화길 152 (평소리 97-1)	평소리, 영정리, 선학리, 화흥리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24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7% 이내	31% 이내	25% 이내	9% 이상

다만, 보건진료직렬 6급 17명 중 13명은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5% 이내	15% 이내	23% 이내	57% 이상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0%	30% 이내	70% 이상	0%	0%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25조 관련)

직 급 별	기 관 별	총 계	본 청	의 사 무 회 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975	-				
정	무 직 계	1	1				
시	장	1	1				
일	반 직 계	805	-				
4	급	6	4	1	1		
5	급	52	26	2	5	3	16
6	급 이하 계	747	-				
연	구 직 계	4	-				
연	구 관						
연	구 사	4	-				
지	도 직 계	30	-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7	-				
별	정 직 계	4	-				
5	급 상 당						
6	급 상당 이하 계	4	-				
기	능 직 계	131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소속 행정기관인 직속기관과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3. 하부행정기관: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u>반포면</u>, 장기면, <u>의당면</u>,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u>신평면</u>, 중학동, <u>웅진동</u>, 금학동, <u>옥룡동</u>, <u>신관동</u></p> <p>제23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998명</u>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u>981명</u></p> <p>2. (생략)</p>	<p>제2조(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 ----- ----- ----- ----- -----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u>반포면</u>, <u>의당면</u>, <u>정안면</u>, <u>우성면</u>, <u>사곡면</u>, <u>신평면</u>, <u>중학동</u>, <u>웅진동</u>, <u>금학동</u>, <u>옥룡동</u>, <u>신관동</u>, <u>월송동</u></p> <p>제23조(정원의 총수) ----- ----- ----- <u>975명</u> ----- ----- -----</p> <p>1. ----- <u>958명</u></p> <p>2. (현행과 같음)</p>

공주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2. 6. 11.)
에서 의결된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2년 6월 19일

공주시 조례 제 825 호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보건진료원” 을 “보건진료직
및 보건진료원” 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3조 관련)

□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일반행정	1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0조, 제37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	주민등록법
사회복지	1	각종 복지관련 증명서 발급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의2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거주지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
	3	확인조사 및 급여변경(직권조사에 한정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의료급여법 제16조
	4	사회복지시설 입소 자활근로사업 참가 대상 추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9조
	5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경과자 재사용 확인(시설 수용자 제외)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6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평가 및 변경사항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제3항
	7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8	기초노령연금 수급 신청·조사 및 변동 등에 관한 관리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9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자 방문조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분야별	일련 번호	건명	근거법령
민원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및 증명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3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자동차관리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4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 신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5	이륜자동차신고사항 변경 신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6	이륜자동차대장 비치·관리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재정	1	시세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송달 및 징수 독촉	지방세법 제27조, 제51조, 제52조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다만,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
	3	지방세 납세증명 (다만,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	지방세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4	시세 징수 지원	지방세법 제 27조
	5	재산세 과세자료 일체조사 협조	지방세법 제194조 공주 시세 조례 제10조
	6	시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제2항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도시주택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3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수리	건축법 제36조
	4	빈집조사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5	광고물 등의 표시·신고수리 (다만, 현수막, 벽보, 전단은 관할 구역에 게시하는 경우에 한정함)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산업경제	1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2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
	3	입산신고수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4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5	공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 경영관리(유구읍장에 한정함)	공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조례 제5조
수 도	1	가구분할 적용신고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1조, 시행규칙 제8조
청소관리	1	행정구역내 대청소 실시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제1호
	2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홍보 지원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제3호
	3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지원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제4호
문 화	1	공주시유구문화의집 관리· 운영: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용허가 등 (유구읍장에 한정함)	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분야별	일련번호	건명	근거법령
일반행정	1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0조, 제37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	주민등록법
사회복지	1	각종 복지관련 증명서 발급 (동 신청분에 한정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의2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거주지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
	3	확인조사 및 급여변경(직권 조사에 한정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의료급여법 제16조
	4	사회복지시설 입소 자활근로 사업 참가 대상 추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9조
	5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경과자 재사용 확인(시설 수용자 제외)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6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평가 및 변경사항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제3항
	7	기초노령연금 수급 신청·조사 및 변동 등에 관한 관리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8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자 방문조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민원	1	출생·사망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동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함)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

분야별	일련번호	건명	근거법령
재정	1	시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다만, 동 신청분에 한정함)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
	3	지방세 납세증명 (다만, 동 신청분에 한정함)	지방세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4	시세 징수 지원	지방세법 제 27조
	5	시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제2항
도시주택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동 신청분에 한정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2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접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3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수리	건축법 제36조
산업경제	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중학동 제외)	농지법 제8조
	2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농지법 제49조
	3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의 발급	농지법 제50조
	4	자경증명 발급(중학동 제외)	농지법 제50조
	5	입산신고수리(중학동 제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6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수도	1	가구분할 적용신고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1조, 시행규칙 제8조
환경관리	1	공중화장실 관리(중학동 제외)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청소관리	1	행정구역내 대청소 실시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제1호
	2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홍보 지원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제3호
	3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지원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제4호

공주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2. 6. 11.)
에서 의결된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2년 6월 19일

공주시 조례 제 826 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한옥마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마을”이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주중”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3. “주말”이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말한다.

제3조(위치) 한옥마을은 공주시 웅진동 337번지(관광단지길 12) 일원에 둔다.

제4조(사업) 한옥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옥숙박시설 등 관리 및 운영
2. 전통혼례 관련 프로그램 지원
3. 전통놀이체험 관련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료 등) ①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시설사용료는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한옥마을 내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③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한옥마을 내 단체 및 개인 숙박동을 사용하려는 자 중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터 및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람
4.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한옥마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공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양도금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손해배상 등)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별칭사용) 한옥마을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 숙박동 예약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체 숙박동을 예약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시설사용료 (제5조제2항 관련)

1. 단체 숙박동 사용료

(단위: 1박 1실, 원)

구 분	학생단체(1실 10명 기준)	일반단체(1실 10명 기준)	
		주 중	주 말
숙박비	100,000	100,000	120,000

비고: 학생은 고등학생 이하를 말하며, 기준정원 초과 시 1명당 5,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2. 개별 숙박동 사용료

(단위: 1박 1동, 원)

구 분	정 원	요 금		동수	1동당 방수	비 고
		주 중	주 말			
일반형 1 (G타입)	13 ~ 15명	200,000	250,000	1	3	욕조
일반형 2 (2C타입)	4 ~ 5명	100,000	120,000	1	2	온돌, 욕조
	3 ~ 4명	80,000	100,000			온돌, 누마루
실속형 (H4타입)	2명	50,000	70,000	1	4	단위: 1박1실 기준
고급형 (F타입)	5 ~ 6명	150,000	200,000	4	2	온돌, 욕조
초가형 (C타입)	3명	130,000	150,000	3	1	온돌

비고: 기준정원 초과 시 1명당 5,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3. 다목적실 사용료

가. 숙박하는 자가 사용 할 경우: 무료

나. 숙박하지 않는 자가 사용할 경우: 2시간 기준 30,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 마다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 공주시 주최·주관일 경우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다.

4. 퇴실시간 초과 시 사용료: 14:00까지 10,000원, 16:00까지 20,000원, 16:00 이후는 1박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5. 오토캠핑장 사용료: 20,000원/1일 1대

6. 야외 취사장 시설사용료: 30,000원/1일

[별표 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제6조 관련)

구 분	감 면 율	
	단 체 숙박동	개 별 숙박동
1. 공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30퍼센트	30퍼센트
2. 수학 여행단 (기준정원 30명 이상)	30퍼센트	
3.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준정원 30명 이상)	30퍼센트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로 기준정원이 30명 미만일 경우 학교장 및 교육관련 단체장으로부터 감면 요청이 있을 경우	30퍼센트	
5.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0퍼센트	30퍼센트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 ~ 3급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30퍼센트	30퍼센트
7.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30퍼센트	30퍼센트
8. 「공주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공주시 명예시민인 경우	30퍼센트	30퍼센트
9.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이버공주시민으로 가입된 사람 중 사이버공주시민증을 제시한 경우	30퍼센트	30퍼센트

[별표 3]

시설사용료 환급기준 (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환급 및 배상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공주시 공약실천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2012년 6월 19일

공주시 훈령 제 200 호

공주시 공약실천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주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과 약속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체계)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과 약속한 내용(이하 “공약사항” 이라 한다)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시장공약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수행하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시장공약업무담당부서의 장이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별로 추진담당을 정하여 수행하게 하며, 주무담당이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제3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시장공약업무담당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 공약사항 검토의견서에 따라 주관부서에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해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개정 포함)
 2.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
 3. 연도별 투자 소요액
- ③ 시장공약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확정하여 주관 및 협조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제3항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공약업무담당부서의 장이 확정·통지한 공약 사항의 사업별 실천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공약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의 취지에 부합
 2.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4. 국가 및 충청남도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
 5.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7.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 ③ 시장공약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통지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주관 및 협조부서에 시달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변경)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보류·폐기를 포함한다)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공약업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사항은 즉시 시장공약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년 초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약사항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7조(공약사항 관리카드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약사항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추진실적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관리카드는 새울행정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시장공약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공약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와 보고회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시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공주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조언·권고 및 건의하여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평가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평가단 단원은 당연직 4명 이내, 위촉직 6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은 국장, 단장, 소장

2. 위촉직은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및 대표성 있는 주민 중에서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⑤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위촉직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시장의 임기 내로 한다.

제10조(평가시기)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1월에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평가단에서 그 시기를 정하여 연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방법)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처음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를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의 공개 등)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립·변경, 추진 상황 및 공약이행 평가결과는 공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제13조(수당 등) 평가단의 위촉직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시장 공약사항 검토의견서 (제3조제1항 관련)

임시관리번호		검토부서						
공 약 명								
사 업 개 요	① 추진배경							
	② 사업규모							
	③ 추진기간							
	④ 재원별 소요액 (백만원)	구 분	계	년	년	년	년	년 이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민자 등						
	⑤ 지원근거							
⑥ 기대효과								
⑦ 검토의견								
⑧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임기 내 완료 <input type="checkbox"/> 임기 내 착수		<input type="checkbox"/> 임기 내 기반조성 <input type="checkbox"/> 추진 불가능 사업					

<검토의견서 작성요령>

- ① 추진배경: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배경 기술
- ② 사업규모: 사업추진 시 적정 사업규모를 결정 기재
- ③ 추진기간: 사업의 적정 추진기간을 작성
- ④ 재원별 소요액: 투자 사업비를 재원별·연도별로 구분 작성
- ⑤ 지원근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지원 근거법령을 상세히 기재
- ⑥ 기대효과: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개조식으로 기재
- ⑦ 검토의견: 공약사업의 실천가능성, 적법성,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투자비 및 효과 비교,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그 밖에 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상세히 작성
- ⑧ 검토결과
 - 임기 내 완료
 - 추진기간이 비교적 단기(1~4년)인 사업과 이미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임기 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
 - 당면 현안사업으로 추진할 사업
 - 임기 내 착수
 - 추진기간이 중기(5~10년)로 단기 완료가 곤란한 사업
 - 가용재원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
 - 임기 내 기반조성
 - 추진기간이 장기간(10년 이상)으로 임기 내 완료가 불가능하며 기반조성이 필요한 사업
 -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지역 여론화를 통하여 추진해야할 사업
 - 추진 불가능 사업
 - 지역여건 및 실정을 감안할 때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 소요사업비가 과다하여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사업비에 비하여 효과가 없는 사업
 - 관련법령 검토결과 추진 불가능 사업

[별지 2호 서식]

시장 공약사항 실천계획 (제4조제1항 관련)

공 약 명		관 리 번 호	
주 관 부 서	(㉠)	협 조 부 서	
사 업 구 분	신규사업, 계속사업	관 련 중 양 부 처	
사 업 기 간	~ (년)	입 기 중 달 성 목 표	완료 · 착수 · 기반조성
총 사업비	○○ 백만원, 비예산사업 “비예산” 으로 표기		

배경 및 목적
○

사업개요
○

세부추진 계획(연차별)
○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별>

연도별 단위사업별	입기 중 투자계획						
	계	기투자	년	년	년	년	년 이후
소 계							
○○사업							
○○사업							

<재원별>

연도별 재원별	입기 중 투자계획						
	계	기투자	년	년	년	년	년 이후
소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민자 등							

기대효과
○

[별지 3호 서식]

시장 공약사항 연도별 추진계획 (제6조 관련)

(부서명:)

□ 사업명:

(단위: 백만원)

구분 (연차별)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비	분기계획				비고
				1/4	2/4	3/4	4/4	
○○년								
○○년								
○○년								
○○년								

[별지 4호 서식]

시장 공약사항 관리카드 (제7조제1항 관련)

관리번호		임기내외 구분	
공약분야		공약사업 구분	
추진사항		총사업비(천원)	
주관부서		협조부서	
공 약 명			
공약사항 내용			
추진개요			
추진기간	추진계획		
연 도	예산구분	총사업비	확보액
순번	추진날짜	추진실적	향후계획

[별지 5호 서식]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제8조제1항 관련)

(○○ 담당관 · 과 · 팀)

1. 총평

2. 총괄

(단위: 건)

총 건 수	완 료	추진 중			미착수	비 고
		소 계	정 상	부 진		
※ 세부공약 건수						

○ 완료

관리번호	제 목	완료연월일

○ 부진 및 미착수

관리번호	제 목	비 고
		“부진” “미착수” ()로 구분

※ 미착수: 착수시기 미도래의 경우에는 착수연도를 기재하고, 시기 미정의 경우는 미정, 계속 검토 중인 경우에는 검토로 구분하여 ()에 표기할 것

단 위 사 업 명

관리번호		주관부서	
완료구분		협조부서	
추진여부		진도율	

사업개요

○ (당초 실천계획 내용과 같게 작성)

그동안 추진실적

○

앞으로 추진계획

○

문제점 및 대책

○

예산집행내역

<세부사업별>

연도별 단위사업별	임기 중 투자계획						
	계	기투자	년	년	년	년	년 이후
소 계							
○○사업							
○○사업							

<재원별>

연도별 재원별	임기 중 투자계획						
	계	기투자	년	년	년	년	년 이후
소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민자 등							